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이용·보급〉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60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 이용 · 보급(안 제44조의7 제6항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2. 26.

다. 회 부 일 : 2025.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마약의 매매·알선 등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는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의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하여 불법정보의 식별·심의 및 해당 정보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용·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마약의 매매·알선 등에 관한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이용·보급(안 제44조의7 제6항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이용·보급할 수 있음(안 제44조의7 제6항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7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용·보급할 수 있다.</u>
<u><신설></u>	⑦ <u>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u>

현행	개정안
<신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개발 및 이용·보급의 방법과 제7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사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 호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불법정보)를 명시하고 있으며¹⁾,

- 1)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음²⁾.

-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심의 건수는 2022년 248,130건, 2023년 264,920건, 2024년 356,945건으로 증가 추세임에도 불법정보 대응인력과 예산은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불법정보에 대한 대응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것으로 보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심의 건수 및 불법정보 대응자원>

		2022년	2023년	2024년
불법정보 심의 건수(건)		248,130	264,920	356,945
불법정보 대응자원	인력(명)	72	72	72
	예산(백만원)	838	880	896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이용·보급하고, 이와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

- 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 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유통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1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³⁾, 불법정보 대부분이 청소년유해정보에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은 현행법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는 그 대상과 적용범위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제41조에 개정안의 내용을 포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시책에 근거하여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에서 아동·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안심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음.
- 또한 불법정보의 일종인 불법촬영물등⁴⁾⁵⁾의 경우,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3)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

마련' 사업에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비교식별기술을 개발하여 조치의무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2023~2025년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 현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사업수행 방식 (수행기관)	계 획 액(백만원)		
			2023	2024	2025
클린스마트 모바일 환경 조성	- 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 언어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추진	보조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협회)	1,393	1,393	1,253
클린인터넷 서비스 환경 조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및 유해정보 유통 의심 사업자 대상 청소년보호 의무 등 이행점검 관리체계 구축·운영	보조 (한국정보 통신진흥협회)	270	236	213
계			1,663	1,629	1,466

<2023~2025년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사업 현황>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사업수행 방식 (수행기관)	계 획 액(백만원)		
			2023	2024	2025
부통신사업자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사전조치 의무사업자 대상 상시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보조 (한국정보 통신진흥협회)	2,312	3,297	2,967

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5) 불법촬영물등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함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사업수행 방식 (수행기관)	계 획 액(백만원)		
			2023	2024	2025
DNA 성능평가 제도 도입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성능평가 제도 운영	보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865	865	778
다중이용시설 비교식별 기술도입 기술지원 체계 구축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지원 등 행정지원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보조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협회)	-	500	450
계			3,177	4,662	4,195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방대한 양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삭제·차단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규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정안의 내용을 제44조의7이 아닌 다른 조로 이동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정안이 현행 제41조와 유사함을 고려하여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